

설계자	확인자		
		설계년월일	2022.03.10.

스리랑카 관세청 컨테이너 검사시설 BOT 사업
본 타당성조사

과업지시서

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

목 차

I. 과업지시서.....	1
1. 개요.....	1
2. 과업기간.....	1
3. 과업내용.....	2
4. 과업의 일반원칙.....	10
5. 과업수행 방법.....	13
6. 과업성과품 제출.....	13
7. 보안대책.....	14
II. 예정공정표.....	16

I. 과업지시서

1. 개 요

□ 과업명 : 스리랑카 관세청 컨테이너 검사시설 BOT사업 본 타당성조사

□ 과업목적

- 스리랑카는 경제발전에 따른 항공 물동량이 증가하는 추세로, 컨테이너 검사시설 확보를 통한 밀수 및 부정무역 발생에 대한 방지가 필요한 상황.
- 본 사업은 스리랑카 콜롬보 항만에 기존의 낙후된 컨테이너검사시설을 대체하여 신규부지 20 에이커(약 25,000 평)에 컨테이너 자동(X-ray)/수동 검사 및 검역을 할 수 있는 연간 40만대 규모의 FCL(Full Container Load) 컨테이너 통합 검사시설을 구축하고 35년 동안 운영하는 사업임.
 - 본 사업에 적용 예정인 X-ray 컨테이너 검색시설은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되어 국내 다수의 항만에 적용중이며, 해외 경쟁 제품에 비해 기술적으로 우수할뿐더러 경제성도 뛰어난 제품으로 해외 수출을 추진
- 이에 따라,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시장조사, 관련 제도 및 사업환경 분석, 사업구조 수립 및 재무적 타당성 검토, 법률 검토 등을 수행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사업의 수익성 및 리스크를 진단하고 스리랑카 정부에 사업 제안 및 협의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

2.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150일

3. 과업내용

1) 시장조사

□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 분석 및 예측

가) 스리랑카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

- 과거 10년 이상 스리랑카 전체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데이터
 - TEU/대수 단위 연간 물동량
 - 수입/수출/환적 구분 물동량
 - 20ft, 40ft 등 컨테이너 용량별 물동량
- 과거 10년 이상 항구별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데이터
 - TEU/대수 단위 연간 물동량
 - 수입/수출/환적 구분 연간 물동량
 - 20ft, 40ft 등 컨테이너 용량별 연간 물동량

나) 콜롬보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

- 과거 10년 이상 콜롬보 항만 전체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데이터
 - TEU/대수 단위 연간 물동량
 - 수입/수출/환적 구분 연간 물동량
 - 20ft, 40ft 등 컨테이너 용량별 연간 물동량
 -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의 영향 및 예측
- 과거 10년 이상 콜롬보 항만 내 터미널별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데이터
 - TEU/대수 단위 연간 물동량
 - 수입/수출/환적 구분 연간 물동량
 - 20ft, 40ft 등 컨테이너 용량별 연간 물동량
 - loaded / empty 구분 연간 물동량
 - FCL / LCL 구분 연간 물동량
 -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의 영향 및 예측
 - 수입 컨테이너화물의 용량(20/40ft)별, loaded/empty, FCL/LCL 구분 물동량
 - 환적 화물의 선적지/목적지별 물동량
 - 대미 수출화물 물동량

다) 컨테이너 물동량 증장기 예측

- 스리랑카 전체/항구별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
- 콜롬보 항만 전체/터미널별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
 - 수입/수출/환적 구분 물동량 예측

□ 스리랑카의 밀수/부정무역 적발 현황

- 연도별 스리랑카 관세청의 관세수입(revenue) 및 정부재정수입 비율 추이
- 주요 밀수/부정무역 품목 및 적발 현황/사례
- 밀수/부정무역으로 인한 세수손실 추계치

□ 스리랑카 항만 및 해운물류 개발 현황

- 스리랑카/콜롬보항만의 해운물류 포지션, 지정학적 위치
- 스리랑카 정부의 항만/해운물류 개발 의지 및 투자
- 스리랑카 항만 및 해운물류 개발 프로젝트 사례
 - 콜롬보
 - 함반토타
 - 트리코말리
- 콜롬보 항만 개발 현황 및 전망
 - 터미널별 개발현황 및 전망 (기간, 규모, 개발주체, 주요기능 등)
 - 터미널별 컨테이너 처리용량 전망

□ 컨테이너 화물 검사 현황

- 수입 컨테이너 중 연간 검사 대수 (실적 및 전망)
 - X선 물리적 검사 대수
 - 수동개장검사 대수
- 수입 컨테이너 화물 위험도 분류
 - Risk Management System 설계 및 운영현황
 - 수입화물 분류 프로세스
 - RED, YELLOW(EMOBOR), GREEN 분류 비율

- 화물 분류별 검사 소요시간 및 장애요인
 - Time Release Study 결과분석 (2018년 WCO)
 - 화물 검사 프로세스 (FCL/LCL, X-ray, 수동검사)
- 화물검사 프로세스 개선 요구사항
 - 관세청 및 화주, 에이전시의 요구사항
- 화물 검사 비용
 - 용량(20/40ft), 종류(FCL/LCL), 방법(X선/수동검사) 별 검사비용
 - 검사비용 징수방법
 - 검사비용 부담 주체

□ 화물검사 시설/장비 운영현황

- X선 검사장비 설치 및 운영 현황
 - X선 검사장비 설치장소, 설치연도, 제작사, 타입
 - 장비별 일간/월간/연간 검사대수
 - 장비별 시간당 최대 검사대수
 - 장비 운영주체, 관세청과의 운영계약 현황
 - 검사료 규정 및 징수방법, 징수주체, 부담주체
- 드라이브스루 방식 검사장비 운영 현황
 - 장비 설치, 운영에 대한 정부(관세청)과의 계약 주요 내용
 - 드라이브스루 방식 검사장비의 운전자 위험 수용성
- 수동개장검사시설 운영 현황
 - RCT/GL1/GL2 개장검사시설 현황 (위치, 주요시설, 운영인력 등)
 - RCT/GL1/GL2 개장시설 운영주체
 - 시설운영에 관한 정부(관세청)과의 계약현황
 - 시설이용료 등 정부와의 계약 현황
 - 화주들이 부담하는 시설이용료 내역
 - 각 시설별 인력현황, 조직, 계약형태

2) 기술분야 사업타당성 분석

□ 입지여건 조사

- 현황조사
 - 대상지 및 주변 지역 일반현황 조사
 - 국가계획, 도시계획, 지역 관련 개발계획 등 조사
 - 자연환경, 사회·경제·문화·환경 현황조사, 등
 - 관련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
- Utility 조사
 - 수전, 용수, 진입도로
 - 콜롬보항에서 검사시설까지의 교통량 분석, 접근성 조사
 - 환경 평가
- Pre-FS Report 검토
 - Pre-FS Report 검토 및 자료 Update
 - Pre-FS Report와 본 FS의 비교검토 및 결과 도출

□ 신규 검사센터 기본설계를 위한 관세청의 요구사항

- 최소 처리 물동량
- X선 검사와 수동검사의 배합
- 기능 및 편의시설
- 특수(냉장 등)화물 요구사항
- 동식물 검역, 식품 및 화학물질검사, 국가표준, 지적재산권 등 타 부처 검사와의 연계

□ 검사시설 기본계획

- Layout 검토
 - 컨테이너 검색시설 최적화 방안 검토
 - X-ray 검색시설, 기타 검색시설 Layout 검토
 - Administration building, Custom office, Laboratory 배치

- Stacking area 최적화
- 컨테이너차량 동선 검토
- 시설 3D Modelling(발주처 발표용)
- 기술 검토
 - 부지 조성 및 기초 검토
 - 주요 국가의 컨테이너 검사시설/프로세스/장비 Benchmarking, 최신 검사장비/기술 조사
 - 검색시설별 기술검토, 적용기술 분석
 - 수배전 시설
 - ICT, Automatic tracking system
 - 수동검사시설, 장비 및 기술 검토
- 인프라 공급 계획 수립
 - 상위계획, 기본계획 등을 고려한 기반시설 설치 방향 제시
 - 공급처리시설 계획 수립 (진입도로, 상수, 우·오수, 전력, 통신 등)
 - 친환경 계획 및 재해 예방 저감대책 수립

□ 공사비 산정

- 공사비 산정 및 기반시설 자원 검토
 - 주요장비 사양 검토
 - 공사수량 산출
 - 현지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 및 Pre-FS 자료와 차이점 분석
 - 신재생에너지(태양광 등) 검토 및 설치비용(Optional) 산정
 - O & M 비용 산출

< 사업제안자 수행 >

- 인허가 절차 검토
- 최적 설비 검토 및 성능 분석
- (주요 기기류 중심) 공사비 금액 산정 지원

3) 재무분야 사업타당성 분석

□ 사업구조 수립

○ 사업구조 수립

- 사업 추진을 위한 최적의 사업구조 제시
- 본 사업의 적정 부채비율 및 타인자본 조달비용 제시
- 스리랑카에서 수행된 PPP 등 사업에 MVG 및 AP 적용 사례 파악하여 본 사업 적용 가능성 검토
- 스리랑카 정부의 FDI(Foreign Direct Investment)에 대한 법인세 10년 면세 등 적용 가능한 Incentive 검토
- 본 사업은 정부의 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PPP 사업으로 스리랑카 내 주요 PPP 사업의 배당조건 검토

○ 사업비 및 운영수입 산정

- 공사비, 금융비용 및 기타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비 산출
- 스리랑카 콜롬보항의 과거 및 현재 물동량 검토 후, 향후 예상 물동량 추이 추정
- 예상 물동량 및 적정 컨테이너 검색료 수준 파악하여 운영수입 산정
- 선박 화주(shippers)가 컨테이너 화물 1대당 검색료를 달러화(USD)로 지불하는 형태로 구성

□ 재무적 타당성 분석

○ 재무모델 작성

- 사업의 재원조달계획, 운영수입 등 주요 가정사항 및 현지 법인세, 부가세 등 주요 세제 반영된 초기 재무모델(Excel File) 제공
- 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재무모델 작성

○ 재원조달계획 수립

- 자기자본 투입계획, 타인자본 조달계획, 컨테이너 검색료 등을 활용한 사업비 조달계획 수립

- Governance를 고려한 재원조달계획 수립
 - 환율변동 및 환전 리스크 헷지 방안 검토
 - 스리랑카에서 수행된 PPP사업 주요 금융 조건 및 금융기관을 파악하여 실현 가능한 금융 조건 및 참여 가능한 금융기관 파악
 - 정치적 위험 및 신용보강 등을 위하여 관련 보험 및 MIGA 활용 등 검토
 - MDB, ECA 등 정책금융 및 상업은행 조달 가능성 및 조달방안 검토
 - 해당국 내 PPP 사업 Project Financing 사례 검토
- 경제성 및 재무 분석
 - 수익성지표 분석(NPV, IRR, ROE, 회수기간 등)
 - 안정성지표 분석(DSCR, 현금과부족 발생여부 등)
 - SPC 추정재무제표 작성
 - 주체별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(Termination Payment) 분석
 - 민감도 및 시나리오 분석
 - 차입방식, 차입조건 세부
 - 자금조달 시나리오 분석(재원조달 구조 변경, 재원별: 외국자본, 국내자본 등)
 - 주요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(사업비, 운영비, 이자율, 환율, 자금조달 등)
 - MVG 및 AP 적용에 따른 민감도 분석

□ 사업위험 분석 (Risk Analysis)

- 국가 리스크(인허가, SPC 설립 및 출자, 운영, 스리랑카 국가 신용도 하락 및 국가 채무 디폴트 리스크 등) 분석 및 헷지 방안
(사업 전체 기간에 대한 정부의 Exclusive Term 보증 등)
- 투자 회수전략 수립 시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 헷지 방안
- 물동량 감소로 인한 수요리스크 검토
- 리스크 관리계획(Risk Management Plan) 수립

4) 법률 검토

□ 사업대상국의 사업 관련 기본 법률 분석

- 사업 추진 형태에 따른 적용 가능한 세금(관세 등) 검토
- 사업 추진 형태에 따른 적용 가능한 규정 검토
- 외국인 투자 및 PPP 등에 따른 SPC 설립 조건 검토
- SPC 설립 및 청산에 따른 절차 및 비용에 대한 법률 검토
- SPC 설립 등 법적 절차 완료까지의 단계별 예상 소요 시간 검토
- 국내 기업의 스리랑카 진출 관련 사례에 대한 법률 분석

□ 사업대상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관련 법률 분석

- 사업대상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건, 권한, 제약 등 재무적 투자자 관점에서의 투자 관련 법률 검토
- 외국인투자법, 관련 제도(정부 고시) 등 검토
- 국/내외 과소자본세제, 외환, 차입규제 등 자본구조에 대한 제약조건 검토
- 투자형태에 따른 세제 검토

※ 발주처는 사업대상국의 기본법률, 투자환경관련 2021년에 분석한 법률 및 제도 자료를 참고로 제공할 예정입니다

□ 사업대상국의 PPP 관련 법률 분석

- PPP에 해당하는 스리랑카의 관련 법률 및 규정 검토
- 스리랑카에서 추진된 PPP 사업 또는 활용되는 PPP 계약서의 주요 조항 검토
- Concession Agreement에 추가될 사항인 AP, MRG, 정부 참여 조건 등 조항 삽입에 대한 검토

□ 법적위험 분석 (Risk Analysis)

- 사업 추진에 있어서 대비해야 될 주요 법적 리스크 검토
- Force Majeure 등 발생 시에 따른 법률 검토 및 스리랑카 내 관련 사례 검토
- 정부 귀책 사유 등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스리랑카 내 관련 사례 검토
- 스리랑카에서 추진된 PPP 사업 중 발생한 분쟁 사례 분석

4. 과업의 일반원칙

□ 자료활용

-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,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
-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,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,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

□ 과업수행원칙

- 최종낙찰자(이하 ‘과업수행자’)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의 수행상 시장조사, 법률, 기술, 수요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, 위탁금액, 위탁의 필요성,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
-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·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(계약상대자, 외부전문기관 포함)가 부담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하여야 함

□ 과업의 변경

-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,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

-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
-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

□ 일반조건

- 과업진행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책임자와 책임 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공사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
-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
-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임의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
- 과업수행 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(영수증 등)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
-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

□ 특별조건

-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우리 공사가 소유함
※ 우리 공사는 과업수행자의 동의 없이 성과품을 사업제안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
-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, 변경할 경우, 기존 인력보다 업무수행역량이 높은 자로 한정하며,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

□ 성과물 작성

- 사용되는 용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, 전문용어는 ()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,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
 -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,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우리 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·납품해야 함
 -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, 양식, 활자크기,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·결정해야 함
 - 공정보고, 현지조사,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자료는 서면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
 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자로부터 <사업제안자 수행> 과업(해당 시)의 결과물을 제공받아 과업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최종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함.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은 감독관 및 사업제안자와 협의하여 결정함
- ※ <사업제안자 수행> 과업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자가 책임을 지고 수행

□ 기 타

-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사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
-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,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

5. 과업수행 방법

□ 전문가 자문

- 본 과업내용 관련 기관의 실무책임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중간보고서 제출 전, 최종보고서 제출 전 등 2회 이상 자문계획(자문회의, 토론회, 워크숍 등)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실시하여야 함

□ 현지조사

- 사업대상국의 인문, 자연, 경제, 법률 및 사업환경 조사 등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대상국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역 및 일정, 조사자(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, 위탁 외부전문기관 포함) 등 해외조사계획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시함
- 과업수행자는 해외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 관련 활동 내역 등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

□ 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

-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여 용역진도보고를 익월 5일 까지 제출해야 함

6. 과업성과품 제출

□ 착수보고

-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,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 -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하고,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, 과업참여자 명단, 과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

□ 중간보고

- 중간보고는 감독관과 보고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 5부를 제출하여야 하며,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시 확인한 주요내용에 대한 과업수행방법을 구체화하고, 검토한 내용의 잠정결론 및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 -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중간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
□ 최종보고

- 최종보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연구한 최종 내용을 보고해야 함. 단,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
- 최종보고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20부를 제출하여야 함. 또한 최종보고서, 기타 참고자료 및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 -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최종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
□ 수정보고서

-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5개월 이내에 추정수입 및 운영비 추정 등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우리 공사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하고, 이 때 수정보고서, 수정 참고자료, 수정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
7. 보안대책

- 과업책임자는 우리 공사 보안업무규정 제44조(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)를 준수하여야 하며,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(별첨)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

-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, 분실,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,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, 대외비와 일반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
-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,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(확정안 포함)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·관리하여야 함
-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
-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,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(업체명, 인가근거, 참여자, 발간일자) 및 원지, 폐지,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
-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, 정규직원에게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
-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문만 생산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,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
-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,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/시행하여야 함
-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

II. 예정공정표

항목		1개월	2개월	3개월	4개월	5개월	비고
1. 현황조사		■					
2. 물동량, 현 시설조사		■					
3. 세금, PPP 제도분석		■					
4. 기본계획 및 EPC금액 산정			■				
5. 법률 검토		■					
6.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				■			
7. 성과품 작성						■	
보고회		착수 보고			중간 보고		최종 보고
과업 진도 율	당기	15	25	20	25	15	
	누적	15	40	60	85	100	

